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공 직 자 윤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신고 기준을 마련하고 방산·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정한 재산증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조정하는 한편, 실무직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 조정(안 제3조제4항제7호, 안 제3조제4항제8호의2 신설, 안 제3조제4항제16호)

- 1)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함

3)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신고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산식을 정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

다. 형성과정 의무적 신고대상 재산 지정(안 제4조제6항 신설)

사인 간 채권 및 채무,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
매수선택권을 공개대상자가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는 재산으로 정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지정(안 제31조의2 신설)

5급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를 정하되,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일부 직
업군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심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방위산업·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33조
제5항 신설)

1) 방산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함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
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함

바. 퇴직공직자 청탁·알선 신고와 처리의 방법 등 명확화(안 제35조의4

제1항 및 안 제35조의4제4항·제5항·제6항 신설)

- 1) 청탁·알선의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 2)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 시 신고자가 요청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서 직무참여 배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3) 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수여 기준을 구체화함

사. 기관별 주식 취득제한 운영 방안 등(안 제27조의13 신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별 제한방안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함

아. 선물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안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안 제30조제3항 신설)

- 1) 선물의 지자체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이 필요한 선물의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 2) 선물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찰 시 최초 가격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하도록 매각 예정가격 조정 근거를 마련함

자. 업무취급제한 위반 확인 관련 자료 요구(안 제35조의5 신설)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8의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3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이 조에서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제13호 중 “제9호까지”를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제16호 중 “임명하는 직원”을 “임명하는 직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석급 이상 직원

제3조제5항 중 “제4항제9호의2”를 “제4항제8호의2, 제9호의2”로 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제4조의4 및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신고방법)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매매된 경우 또는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를 한 경
우
3.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text{주당 평가액} = 1\text{주당 당기순이익가치}(1\text{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div \text{「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차율}) \times 3/5 + 1\text{주당 순자산가치}(\text{순자산가액} \div \text{발행주식총수}) \times 2/5$

③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주식 발행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

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⑤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무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⑧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⑨ 제2항의 계산식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 단서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하 이 항에서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는”으로, “경우”를 “경우 등록의무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의2제5항”을 “법 제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개대상자등의 보수”를 “보수”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로, “징계의결의 요청이나”를 “징계의결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8조의2제2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를 “전보 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3(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방안
4.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제29조제2항 중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제3조 제5호에 따른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유재산”을 “국유·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조달청장은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취업심사대상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중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제8호 중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및 제9호 중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

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1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12.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3.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 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

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석급 이상 직원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② 제1항제13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문”을 “본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제3조제4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17호”를 “제31조의2제1항제20호·제21호 또는 제23호”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중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를 “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제33조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을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항”으로, “10월 31일”을 “10월 31일(협회의 경우는 매년 2월 말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 법 제17조제1항제12호가목
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교육감 : 각 기
관이 주무관청인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 및 법 제17조제1
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제33조의2 중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을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전단 중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
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취업”을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으로 한다.

제35조의4의 제목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를 “(청탁 또는 알
선에 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8조의4제2항”을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
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
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
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청탁·알선”을 각각
“청탁 또는 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을 각각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로 하고,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종전의 제3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할 수 있”을 “공개해야 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심사 결과”를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한다.

제32조 제목, 제32조제2항, 제33조 제목,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1호, 제33조제5항제2호, 제33조제5항제3호, 제33조제5항제4호,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의3제1

항 제2호, 제34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5호, 제34조제3항제7호, 제35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2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및 제35조의6제2항제2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8호의2, 제16호 단서 및 제31조의2제1항제11호,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는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생략)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④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u>	7. <u>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8의2. <u>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u>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

10.

다

같

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 12. (생략)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 15. (생략)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단서 신설>

-----.

10의2. ~ 12. (현행과 같음)

13. -----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14. · 15. (현행과 같음)

16. -----

----- 임명하는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석급 이상 직원

17. ~ 19. (생략)

⑤ 제4항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삭제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17. ~ 19.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8호의2, 제9호의2-----

-----.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제4조의3(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신고방법)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 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

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매매된 경우 또는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

를 한 경우

3.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2/5

③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주식 발행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
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에는 액면가로 한다.

⑤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
의무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
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
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
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
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⑦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u>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 <u>⑧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u> <u>⑨ 제2항의 계산식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제4조의3 · 제4조의4 (생략)</u>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제4조의3</u>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	<u>제4조의4 · 제4조의5 (현행 제4조의3 및 제4조의4와 같음)</u>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 ----- ----- ----- ----- ----- <u>제4조의4</u> ----- -----

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항에서 “공개대상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생략)

4. 공개대상자등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생략)

② ~ ④ (생략)

-----.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경우 등
록의무자에게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6항-----

--

3. (현행과 같음)

4. 보수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
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
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략)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
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4. (생략)

③ 삭제

④ · ⑤ (생략)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
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
2항제4호 -----
----- 징계의결의 -----

-----.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2항-----
----- 제6항-----

--

3.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
가신청 등) ① -----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전보 등이 된 날

나.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② ~ ⑥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

----- 전보 등이 된 -----

<삭제>

<삭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13(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② <u>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u> ③ <u>각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u>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u> 2. <u>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u> 3. <u>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방안</u> 4. <u>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u>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① (생략)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u>제9조에 따른</u>	② ----- ----- ----- ----- ----- ----- <u>제3조제5호에</u>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
·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
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
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선물의 처분) ①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
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따른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으로 -----

제30조(선물의 처분) ① -----

----- 국유·공유재산-----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달청장은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
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
격을 낮출 수 있다.

제31조의2(취업심사대상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
체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
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

2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중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제8호 중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및 제9호 중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
구관·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
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
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
· 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
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
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
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
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
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
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

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2.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3.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

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

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

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

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
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
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
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
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
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
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
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
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
는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
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u>본문</u>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 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u>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석급 이상 직원</u> 23.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 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u>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u>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u> 2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u>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u> ② <u>제1항제13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u>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 ----- <u>본문 단서</u> ----- ----- ----- ----- ----- ----- -----.
---	---

1. · 2. (생략)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7. (생략)

8. 제3조제4항제14호 · 제15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

1. · 2. (현행과 같음)

② -----

----- “취업심사대상기관”-----

-----.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의2제1항제20호 · 제21호 또는 제23호-----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대상기관-----
-----.

1. (현행과 같음)

2. -----
----- 취업심

한기관

가. 나. (생략)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
소

3. 4. (생략)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한다.

③ · ④ (생략)

<신 설>

사대상기관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
소 및 합작법무법인

3. 4.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협

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
른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
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
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
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⑤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 (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2.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3.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4.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법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⑥ ----- 취업심사대상기관을 -----

---. -----

----- 취업심사대상기관 -----
-----.

1. 취업심사대상기관-----

2. 취업심사대상기관-----

3. 취업심사대상기관-----

4. 취업심사대상기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
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
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
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
육감은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의 명세서를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파일
로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⑦ -----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
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취업심
사대상기관-----
-----취업심사대
상기관-----
10월 31일(협회의 경우는 매년
2월 말일을 말한다)--.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4.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별자치도지사: 법 제17조제1
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신 설>

<신 설>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
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
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
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
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
사업청장 : 법 제17조제1항제
1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기업
체 또는 법인·단체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시·도 교육
감 :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
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
는 법인·단체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 취업심사대상
자가 법 제18조제1항-----

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1. ----- 취업심사대

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u>취업제한기관</u>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 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u>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u>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u>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u>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취업승인) ①·② (생략)	<u>상기관</u>----- 2. ----- ----- ----- ----- <u>취업심사대상기관</u> ----- ----- ----- ② ----- ----- ----- ----- <u>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u>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 <u>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u>----- ----- ----- -----. 제34조(취업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생략)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생략)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

③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_____ 취업심사
대상기관 _____

4. (현행과 같음)

5. -----
----- 취업심사대상
기관-----

6. (현행과 같음)

7. -----

----- 취업심사대상기

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9. (생략)

④ (생략)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 -----

8.·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

----- 취업

심사대상기관-----

-----.

② -----

----- 취업심사대상기관-----

-----.

---.

③ ~ ⑤ (생략)

제35조의4(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생략)

③ (생략)

<신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 청탁 또는 알선 -----.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청탁 또는 알선-----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신 설>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35조의5(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

제35조의5(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4. (생략)

제35조의6(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

제한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 공개해야 한-----.

1. (현행과 같음)

2. -----
----- 심사 결과와 각
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4. (현행과 같음)

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

----- 취업심
사대상기관-----

-----.

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u>취업제한기관명</u>,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생략)	----- ----- ----- ----- ----- ----- ----- -----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u>취업심사대상기관명</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452